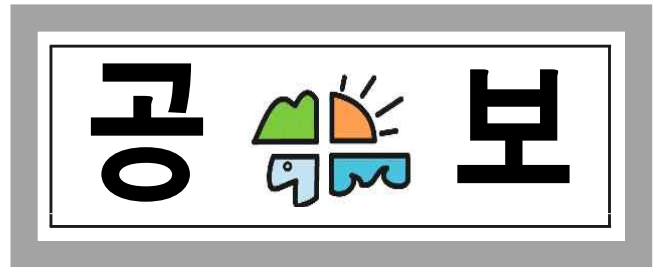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50호 2015년 8월 13일(목)

조 례

-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공 고

-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3
- 속초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7
-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88
-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4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15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귀청한 때”를 “귀청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90일”을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45일”을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신 4월 미만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30일에 한정하여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1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개최로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 및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창안·제안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시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재직자가 명예퇴직시는 10일의 휴가를 추가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다.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 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 비 고

- 1)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따른다.
- 2)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개정이유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일부 조정 및 신설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도모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16호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같은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과 같은법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73조의 6·18자유상이자”로, **같은 조 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적용 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로,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가수호와 국익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최소한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지원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 도모와 함께 예우와 형평성을 해소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17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택법」”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2호가목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중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를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로 한다.

제4조제6호 다음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6호의2.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6호의3.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
원회에서 결정된 주택

6호의4. 법 제43조의3 및 「건축법」 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유지 ·
관리 점검비용

제5조 중 “7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5조 관련)

규 모(세대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90%이하	5백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1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1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5백만원
1000세대이상	사업비의 50%이하	3천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90%까지 우선 지원한다.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 보완을 통해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18호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우는”를 “경우에는”로, “7일”을 “5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의거하여”를 “의하여”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3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의료보호1종”을 “의료급여 1종”으로, “사용요금에 한하여”를 “사용요금에 한정하여”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설치한 때”를 “설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50조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로 하고, 별표 1(기존의 별표 2), 별표 3(기존의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 종 별 요 금 표(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가 및 적용시기			
		2015년 9월 고지분까지 적용	201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
가 정 용	1-10톤	톤당 450	톤당 490	톤당 530	톤당 580
	11-20톤	560	610	660	720
	21-30톤	690	750	810	880
	31-40톤	890	970	1,050	1,140
	41-50톤	1,170	1,280	1,390	1,500
	51톤이상	1,440	1,570	1,700	1,840
일 반 용	1-30톤	톤당 790	톤당 860	톤당 930	톤당 1,010
	31-50톤	960	1,050	1,140	1,220
	51-100톤	1,210	1,320	1,430	1,540
	101-300톤	1,520	1,660	1,810	1,930
	301-500톤	1,980	2,160	2,350	2,520
	501톤이상	2,430	2,650	2,860	3,100
대 중 탕 용	1-200톤	톤당 530	톤당 580	톤당 620	톤당 670
	201-300톤	620	680	730	780
	301-500톤	810	880	940	1,030
	501톤이상	1,030	1,120	1,200	1,310
산 업 용	1-300톤	톤당 430	톤당 470	톤당 500	톤당 540
	301톤이상	650	710	760	820

[별표 3]

구경별 정액요금(제3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경별	단가 및 적용시기			
	2015년 9월 고지분까지 적용	201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
13mm	400	440	480	510
20mm	1,130	1,190	1,250	1,460
25mm	1,830	1,960	2,090	2,350
32mm	3,200	3,460	3,720	4,100
40mm	5,450	5,900	6,350	6,990
50mm	8,340	9,060	9,770	10,700
75mm	20,650	22,480	24,320	26,430
100mm	34,580	37,660	40,750	44,240
150mm	75,190	82,710	89,520	97,100
200mm	105,960	115,470	124,980	135,510
250mm	142,920	155,750	168,580	182,780
300mm	172,360	187,840	203,320	220,430
350mm	216,960	236,460	255,960	277,470
400mm	236,120	257,340	278,560	301,970

◇ 개정이유

- 가.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공기업 재정운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요금인상으로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 나. 환경부의 표준조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13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19호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3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26조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나.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사용량(톤)	단가(원) 및 적용시기					
		2015년 9월 고지분까지	2015년 10월 고지분 부터	2016년 10월 고지분 부터	2017년 10월 고지분 부터	2018년 10월 고지분 부터	2019년 10월 고지분 부터
가정용	1 - 10	230	265	305	351	404	465
	11 - 20	260	299	344	396	455	523
	21 - 30	290	334	384	442	508	584
	31 - 40	330	380	437	503	578	665
	41 - 50	360	414	476	547	629	723
	51 이상	390	449	516	593	682	784
일반용	1 - 30	280	322	370	426	490	564
	31 - 50	330	380	437	503	578	665
	51 - 100	390	449	516	593	682	784
	101 - 300	480	552	635	730	840	966
	301 - 500	600	690	794	913	1,050	1,208
	501 이상	720	828	952	1,095	1,259	1,448
대중탕용	1 - 200	260	299	344	396	455	523
	201 - 300	280	322	370	426	490	564
	301 - 500	330	380	437	503	578	665
	501 이상	370	426	490	564	649	746
산업용	단일종량제	330	380	437	503	578	665

◇ 개정이유

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사용료로 인하여 공기업 재정운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요금인상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나. 상위 법령 상 위임 근거가 없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 용어, 명칭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법령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 및 다툼의 소지가 있고
- 물가상승을 대비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아져 종량제봉투가격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등 폐기물 배출자와의 형평성 필요

2.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 제2장 : 폐기물의 처리
 -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2조(수수료의 감면)

○ 제3장 : 폐기물관리

-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제14조(배출방법 등),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제16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 제4장 : 신고포상금

- 제17조(신고자 포상), 제18조(신고방법), 제19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22조(신고자의 보호)

○ 제5장 : 종량제봉투

-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색상 등),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 제6장 : 보칙

- 제27조(위탁운영), 제28조(행정위탁), 제29조(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 연락처 : 전화(033-639-2337), 팩스(033-639-2386), 이메일(sangkum2043@korea.kr)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

다.

6. "특수용 종량제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해 PP마대로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7.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폐기물의 처리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

하거나 노천(露天)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奧地)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 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

으로 구분·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기준은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장 폐기물관리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는 용기 또는 장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따른 여객터미널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관리자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5.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6.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7.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제14조(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수거를 미루거나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고, 배출요령은 별표 4와 같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은 특수용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를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4장 신고포상금

제17조(신고자 포상) ①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 1회 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날(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8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實名)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

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당시 속초시에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종량제봉투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 : 생활폐기물에 사용
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
3. 특수용 종량제봉투 : 가정에서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에 사용

4.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 흰색
2. 재사용종량제봉투 : 옅은 녹색
3. 공공용 종량제봉투 : 청색
4. 특수용 종량제봉투 : 황색(p.p마대)
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황색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 도입,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原板)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檢收)하여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대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공급위탁수수료를 민간대행공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골목길·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장소의 단체 청소활동에 대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이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정화활동사항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량을 판단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
3.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이행의무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취소를 원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지판(스티커)을 회수하여야 하고,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2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시설 또는 장비 노후(老朽) 그 밖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 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4조, 제6조, 제13조, 제21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1	가 방	대형(높이 60cm 이상)	3,000	
		중형(높이 60cm 미만)	2,000	
		소형(높이 30cm 미만)	1,000	
2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3,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4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5	거 울	1㎡ 이상	3,000	
		1㎡ 미만	2,000	
6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2,000	
7	교자상	4인 이상	4,000	
		4인 미만	3,000	
		3인 미만	2,000	
8	기타폐기물	0.5㎡ 미만	3,000	
		0.5㎡ ~ 1㎡	5,000	
		1㎡ 초과 0.5㎡ 마다	3,000	
9	깨진유리/항아리	5kg 미만	2,000	
		초과 1kg당	1,000	
10	난 로	30평형 이상	4,000	
		30평형 미만	3,000	
		20평형 미만	2,000	
11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12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13	대자리	모든 규격	2,000	
14	돌침대	더 블	50,000	
		싱 글	30,000	
15	런닝머신	모든 규격	20,000	
16	매트리스	더블/퀸	9,000	
		싱 글	7,000	
17	목 재	5kg미만	2,000	
		초과 1kg 당	1,000	
18	문 갑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3,000	
19	문 짝	목 재	3,000	
		폐화유리	15,000	
		강화유리	30,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20	문서세단기	모든 규격	5,000	
21	믹서기/분쇄기	모든 규격	3,000	
22	벽시계	대 형(높이 1m 이상)	4,000	
		중 형(높이 1m 미만)	3,000	
		소 형(높이 50cm 미만)	2,000	
23	변기통	양변기	11,000	
		좌변기	5,000	
		소변기	9,000	
24	병 풍	대형(높이 1.5m 이상, 1폭당)	2,000	
		소형(높이 1.5m 미만, 1폭당)	1,000	
25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26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27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28	서랍장	5단 이상	7,000	
		4단 미만	5,000	
		3단 미만	4,000	
29	선풍기	초대형(높이 1.5m 이상)	5,000	
		대 형(높이 1.5m 미만)	4,000	
		중 형(높이 1m 미만)	3,000	
		소 형(높이 50cm 미만)	2,000	
30	세면대	대리석	10,000	
		도자기	5,000	
		FRP	4,000	
31	쇼 파	4인용 이상(특대)	12,000	
		3인용	8,000	
		2인용	6,000	
		1인용	4,000	
32	수족관	2㎡ 이상	30,000	
		1㎡ 이상	13,000	
		1㎡ 미만	8,000	
		50cm㎡ 미만	3,000	
33	스캐너	모든 규격	3,000	
34	스탠드	모든 규격	3,000	
35	스피커	대 형(높이 50cm 이상)	3,000	
		중 형(높이 50cm 미만)	2,000	
		소 형(높이 30cm 이하)	1,000	
36	식 탁	6인용 이상(목재)	6,000	
		6인용 미만(목재)	4,000	
		6인용 이상(대리석)	20,000	
		6인용 미만(대리석)	15,000	
37	식기건조대	모든 규격	3,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원)	비 고
38	식기세척기	가정용	4,000	
		업소용	10,000	
39	신발장	길이 1.5m 이상(특대)	8,000	
		길이 1m 이상	6,000	
		길이 1m 미만	3,000	
40	싱크대	길이 1.2m 이상(1쪽당)	10,000	
		길이 90cm 이상(1쪽당)	7,000	
		길이 90cm 미만(1쪽당)	5,000	
41	액 자	길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2,000	
		길이 50cm 미만	1,000	
42	오디오 장식장	폭 1m 이상	4,000	
		폭 1m 미만	3,000	
43	오락기	대 형(높이 1.5m 이상)	10,000	
		중 형(높이 1.5m 미만)	8,000	
		소 형(높이 1m 미만)	5,000	
44	옥매트	더블(2인용)	13,000	
		싱글(1인용)	8,000	
45	울 겐	모든 규격	8,000	
46	옷걸이	모든 규격	3,000	
47	욕 조	대리석	15,000	
		FRP	5,000	
48	이 불	겨울용(장당)	2,000	
		여름용(장당)	1,000	
49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3,000	
50	자전거	일반용	4,000	
		어린이용	3,000	
51	의 자	대형(3인용 이상)	4,000	
		중형(3인용 미만)	3,000	
		소형(1인용)	2,000	
52	유모차	대형	4,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53	장 롱	폭 1.2m 이상 1쪽	14,000	
		폭 1.2m 미만 1쪽	10,000	
		폭 60cm 미만 1쪽	6,000	
54	장식장	90cm*150cm 이상	8,000	
		90cm*150cm 미만	7,000	
55	장난감 및 인형류	3kg 미만	1,000	
		초과 1kg 당	1,000	
56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57	전기/압력솔	모든 규격	3,000	
58	전기매트	모든 규격	3,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원)	비 고
59	전자울겐	대 형(길이 1.5m 이상)	10,000	
		중 형(길이 1.5m 미만)	8,000	
		소 형(길이 1m 미만)	5,000	
60	전화기	모든 규격	1,000	
61	정수기	스탠드형	5,000	
		탁상형	3,000	
62	책꽂이	4단 이상	4,000	
		4단 미만	3,000	
63	책 장	90cm*150cm 이상	6,000	
		90cm*150cm 미만	5,000	
64	책 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6,000	
65	청소기	업소용	5,000	
		가정용	3,000	
66	침대 받침대	더블/퀸	10,000	
		싱 글	6,000	
67	카펫트	가정용(면적 1㎡ 미만)	3,000	
		가정용(면적 1㎡ 초과 0.5㎡ 마다)	1,000	
		업소용(면적 1㎡ 미만)	4,000	
		업소용(면적 1㎡ 초과 0.5㎡ 마다)	1,000	
68	캐비닛	대형(높이 1.5m 이상)	11,000	
		중형(높이 1.5m 미만)	10,000	
		소형(높이 1m 미만)	8,000	
69	캔음료 자판기	모든 규격	25,000	
70	컴퓨터	본 체	3,000	
		모니터	3,000	
		프린터(잉크젯)	3,000	
		스피커	1,000	
		키보드	1,000	
71	탁구대	모든 규격	15,000	
72	탁자(테이블)	90cm*180cm 이상	10,000	
		90cm*180cm 미만	5,000	
73	텔레비전 받침대	가로 1.5m 이상	4,000	
		가로 1.5m 미만	3,000	
		가로 1m 미만	2,000	
74	팩스기기	모든 규격	3,000	
75	플라스틱류	5kg 미만	3,000	
		초과1kg 당	1,000	
76	피아노	그랜드	23,000	
		어프라이트	14,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원)	비 고
77	화일캐비닛	4단 이상	5,000	
		3단 이하	3,000	
78	화장대	길이 1m 이상(거울별도)	5,000	
		길이 1m 미만(거울별도)	3,000	
79	환풍기	모든 규격	2,000	
8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81	냉장고	500ℓ 이상	20,000	
		500ℓ 미만	11,000	
		300ℓ 미만	10,000	
		200ℓ 미만	7,000	
		100ℓ 미만	5,000	
82	복사기	대 형(복합기)	12,000	
		중 형	8,000	
83	에어컨 (실외기,유류통 포함)	264m ² 형 이상	15,000	
		66m ² 형 이상	10,000	
		66m ² 형 미만	8,000	
84	온풍기	264m ² 형 이상	8,000	
		66m ² 형 이상	5,000	
		66m ² 형 미만	4,000	
85	오디오	대 형(높이 1m 이상)	5,000	
		중 형(높이 1m 미만)	4,000	
		소 형(높이 50cm 미만)	3,000	
86	자동판매기	대 형(높이 1.5m 이상)	12,000	
		중 형(높이 1.5m 미만)	8,000	
		소 형(높이 1m 미만)	5,000	
87	텔레비전	50인치 이상	12,000	
		50인치 미만	10,000	
		40인치 미만	8,000	
		30인치 미만	5,000	
		20인치 미만	3,000	
88	세탁기	10kg 이상(드럼)	8,000	
		10kg 미만	5,000	
		5kg 미만	4,000	

비고) 대형폐기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중량, 크기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적용함

[별표 2]

반입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적용대상 폐기물	단위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톤	38,500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톤	84,500
음식물류 폐기물	톤	86,650

[별표 3]

규 격 봉 투 가 격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ℓ)	봉투판매소 공급가격	소비자판매가격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1	45	50
	3	72	80
	5	90	100
	10	180	200
	20	360	400
	30	490	550
	50	860	950
	75	1,260	1,400
	100	1,710	1,900
P.P포대	100	2,520	2,800

비고 1. 음식물폐기물용, 재사용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과 동일

[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4조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종이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료수·식용유) ◦ 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등(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3. 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 제거할 것 ·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틱류	◦ 페트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스티로폼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표(廢浮漂)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7조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	건당 500,000원
2.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15,000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건당 25,000원
마.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50,000원
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건당 100,000원
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0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3.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2)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20,000원 건당 10,000원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50,000원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2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20,000원 건당 10,000원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그 밖의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20,000원 건당 10,000원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건당 50,000원

[별지제2호서식]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년월일	신고자				위반자				과태료		포상금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위반 일시	성 명	주 소	위반 행위	부과일	금액 (원)	지급일	금액 (원)	계좌 번호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근거 법인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개정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제5조(종량제 봉투의 제작관리), 제6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 제7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8조(수수료 감면 및 봉투 무료지급), 제9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0조(판매소의 명칭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 제11조(판매소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 제12조(대장비치), 제13조(규제의 재검토)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 연락처 : 전화(033-639-2337), 팩스(033-639-2386), 이메일(sangkum2043@korea.kr)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①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재활용성 폐기물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용기(1조당 4분류 이상)를 설치

2. 조례 제13조제4호의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경영자 : 공동주택 50세대를 기준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1조당 5분류 이상)를 1조 이상 설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비치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기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등)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거주자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특히,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지역은 폐기물 배출 지정요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사유지 제외)

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배출예정일 1일 전에 시장 또는 민간 대행업자에게 유선으로 신고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방문수거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대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수원부

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처리 수납부

4. 재활용폐기물은 공동주택의 경우 품목별로 분리·배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투명한 봉투 또는 재활용배출 p.p마대에 담아서 지정된 수거일자에 따라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제작관리)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공급할 수 있다."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주 유치대상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에 한하며, 광고게재는 봉투 후면으로 한다.

2. 봉투에 광고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봉투 제작대금 납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봉투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봉투로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봉투는 광고주가 시장에게 별도의 봉투공급 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봉투는 봉투판매소에 공급·판매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민간협찬 신청접수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제작사양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봉투의 수령, 공급, 감면지급 등 재고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에 대한 봉투의 공급방법) ① 시장 또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 대행공급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작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판매소까지 직접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인은 봉투 용량 별로 필요한 수량을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에게 우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봉투소요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봉투판매인이 원하는 날짜 전에 판매소까지 직접 공급하고 소정의 봉투 대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봉투공급 후 제작과정에서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판매대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영수원부

2. 별지 제9호 서식의 봉투판매 수납부

⑤ 시장은 봉투의 공급·판매를 민간에 공급 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용 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봉투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의 봉투공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 공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해당 청소지역의 청소인력 및 수거예상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소요량을 봉투사용 1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단지 청소를 할 경우
2. 시장상가단지 또는 상가건물의 통로를 청소할 경우
3. 공급받은 공공용봉투를 연 1회 이상 목적 외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수수료 감면 및 봉투무료지급)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중 일반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개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별지 제13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② 시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스티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소의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 등)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

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② 지정받은 판매소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별지 제13호 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제11조(판매소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 제9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시장 또는 민간 대행 공급업자는 봉투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대행 공급업자의 경우 제4호의 대장은 비치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의 봉투 수불대장

2. 별지 제19호 서식의 봉투 판매대장

3. 별지 제20호 서식의 봉투구입 접수대장

4. 별지 제21호 서식의 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대장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2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작사양(제5조 관련)

□ 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 1ℓ,3ℓ,5ℓ,10ℓ,20ℓ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탄산칼슘 첨가제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 속초시 문장 쓰레기 봉투(ℓ) - 일반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 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9-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탄산칼슘 첨가제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 속초시 문장 쓰레기 봉투(ℓ) - 음식물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용목적 이외에 이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5-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10ℓ, 20ℓ	□ 20ℓ, 50ℓ, 100ℓ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탄산칼슘 첨가제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 속초시 문장 쓰레기 봉투(ℓ) - 재사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9-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탄산칼슘 첨가제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 속초시 문장 쓰레기 봉투(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등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5-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재질은 LDPE, MDPE, 생분해성수지를 사용한 경우)

주 : 1. 「 」는 탄산칼슘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을 경우 표기

제작사양(제5조 관련)

☐ 특수규격봉투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속초시 문장

쓰레기마대(100ℓ)

-생활폐기물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반드시 이 마대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3. 이 마대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속 초 시 장

연락처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635-2337)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판매소 표지판(제9조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쓰레기봉투판매소

- 비고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 검정색 글씨로 양면 표시한다.
4.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00밀리미터, 세로 300밀리미터, 두께 30밀리미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No. _____

영수원부

☐ 신고번호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_____ 원
W _____

☐ 대형폐기물 처리내역

종류	규격	수량	수수료

년 월 일

☐ 확 인 자

직급(직위) :

성 명 : (인)

No. _____

영수증

☐ 신고번호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_____ 원
W _____

☐ 대형폐기물 처리내역

종류	규격	수량	수수료

년 월 일

☐ 확 인 자

직급(직위)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대형폐기물처리 수납부

일련번호	신고일자	신고방법	신고자(수수료 부과대상)						처리일자	처리 수수료	결재		
			주소	성명	전화번호	폐기물 품명	규격	수량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지급대장

신고 연월일	신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내용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비고
	주소	성명	연락처		부과일	금액(원)	지급일	금액(원)	계좌번호	

[별지 제4호 서식]

쓰레기봉투 제작대금 납부서

납부금액 : 금 원(W)

납부자현황	사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게재를 하여(사은품 증정용, 스폰서제작용)으로 사용하고자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제작비용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업체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

속초시장 귀하

봉투제작 납품완료 통보서

사업체명 :

대표자 성명 :

귀하께서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제1항에 따라 납부한 종량제봉투 제작 광고게재 물품이 제작완료 납품되어 년 월 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봉투제작 납품완료 통보서

사업체명 :

대표자 성명 :

귀하께서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제1항에 따라 납부한 종량제봉투 제작 물품이 제작완료 납품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아래와 같이 구입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봉투구입처: (☎)
2. 봉투구입대금: 금 원(W)
3. 산출근거: ()ℓ용 ()매×단가()원= 원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민간협찬 신청접수대장

결재			접수		스폰서 신청내용		신청인		납입금액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번호	일자	주소(상호명)	성명	봉투수량	금액	고지일자	납입일자	

[별지 제8호 서식]

No. _____
영주원부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_____ 원
○ 판매내역 : ₩ _____

용량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매수						
금액						

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

No. _____
영주증

○ 지정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 금 액 : 금 _____ 원
○ 판매내역 : ₩ _____

용량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계
매수						
금액						

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봉투판매 수납부

연도	일련 번호	납부 내역	납기일	수납인	납세 의무자		비고
					주소	성명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서					
행사명					
청소지역(장소)	명	쓰레기수거 예상량	kg		
참여 예상인원					
청소 기간					
봉투신청자	기관단체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청량	ℓ용 매		공급기한	년 월 일까지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행사(청소)계획 입증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1호 서식]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

지급 일자	감면 대상자			감면 사유	봉투 배부량 (매)			수령인	결제		
	주소	성명	가족수		계	음식물용 3ℓ	일반용 20ℓ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12호 서식]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판 매 소 위 치				
판매소와 인근주요 시설물과의 위치		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의 위치도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속초시 종량제봉투의 판매에 따른 판매소 지정에 대하여 속초시장을 “갑”이라 하고 지정을 원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상호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계약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판매소의 지정, 판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봉투의 제작·보급 및 판매) “을”은 “갑”이외의 자에게 봉투를 양수할 수 없으며, “갑”이 제작·하여 보급하는 봉투에 한하여 판매 한다.

제3조(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을”이 판매코자 하는 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속초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갑”이 필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①“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갑”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판매소임을 표시하는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주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을”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을”은 판매소지정서 후면에 명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정액판매) “을”은 봉투의 용량별로 정액판매 하여야 하며, 봉투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용 량 별	ℓ	ℓ	ℓ	ℓ	ℓ	비 고
판매가격	원	원	원	원	원	

제6조(공급가격)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봉투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용 량 별	ℓ	ℓ	ℓ	ℓ	ℓ	비 고
공급가격	원	원	원	원	원	

제7조(봉투의 무효) “을”이 매수한 봉투 중에서 파손된 봉투 또는 현저하게 훼손된 봉투는 무효로 하여 “갑”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교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약 및 변경)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봉투판매상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해석) 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견을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성 명 : 속초시장 (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제 호			
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판매소 위치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 내용	확인

판매인의 준수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규격 가격표를 부착하시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거주이전 등의 정당한 사유로 규격봉투 대금을 반환요청 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4. 모조·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 : 시청 환경위생과 639-2337)
5. 모조·불법유통 봉투 판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기타 행정지시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봉투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				
현판매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판매소 위치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승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유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판매소지정서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별지 제17호 서식]

☐ 휴업 봉투판매소 ☐ 폐업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사유					
휴업일 경우 휴업 기간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판매소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속초시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1. 판매소지정서 1부 2. 봉투판매소 입간판 1부 3.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

봉투 수불대장(용, ℓ)

(단위 : 매)

[illegible]

※ 일반용, 공공용, 관광지용, 음식물쓰레기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작성

]

봉투 판매대장

날짜	지정 판매소 (상호명)	봉투 신청량																														비 고						
		총계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소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P.P 마대		소계		1ℓ		3ℓ		5ℓ		10ℓ			20ℓ		소계		10ℓ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별지 제20호 서식]

봉투구입 접수대장

(단위:매)

날짜	지정 판매소 (상호명)	봉투 신청량																			비고	
		총계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소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p.p 마대	소계	1ℓ	3ℓ	5ℓ	10ℓ	20ℓ	소계	10ℓ	20ℓ		

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위치	전화번호	비고

※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활동 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일반 생활폐기물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구분 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5조(시장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 사항),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0조(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속초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17-701),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 연락처 : 전화(033-639-2337), 팩스(033-639-2386), 이메일(sangkum2043@korea.kr)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되 그 중 제2호는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밀폐식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휴게·일반음식점 및 관광숙박업 영업을 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의 경우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

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 제거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와 지정된 전용용기에 배출
2.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종량제 시행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한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배출
3. 제2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3,4서식)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고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의5, 6서식) 교부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이행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3, 4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발생억제 방법이나 폐기물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계획 이행여부, 자가처리 시 재활용방법, 위탁재

활용 시 수수료 부과 등 신고사항 확인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8조, 제15조, 제16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1. 식품 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1.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탈수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장비)에 배출 2.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3. 비닐류,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구분	배출요령	
채소류	통무,통호박,통배추 등	큰 덩어리는 처리 기계에 유입 불능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흙이나 이물질은 사료로 사용 못함
	양파, 마늘,옥수수 껍질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u>일반 생활폐기물</u>
과일류	호두,밤 등의 껍데기와 과일의 씨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u>일반 생활폐기물</u>
	과일 등의 껍질(수박,파인애플)	큰 덩어리는 처리 기계에 유입 불능, 잘게 부수어 배출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큰 뼈다귀	사료 및 퇴비에 적절치 않으므로 <u>일반 생활폐기물</u>
	비계,내장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료 및 퇴비에 적절치 않으므로 <u>일반 생활폐기물</u>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 패류 껍데기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사료 및 퇴비 생산에 적절치 않으므로 <u>일반 생활폐기물</u>
	멍게,게·가재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의 내장	독성으로 인하여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u>일반 생활폐기물</u>
기타	달걀·오리알·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사료 및 퇴비를 생산하는데 적절치 않으므로 <u>일반 생활폐기물</u>
	해초류	가공·유통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u>일반 생활폐기물</u>
	김치, 젓갈류	맵고 짠 음식은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는데 적절치 않음
	차류찌꺼기(티백포함),한약재 찌꺼기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u>일반 생활폐기물</u>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설립 계획을 승인받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건립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자원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모색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여 살고싶은 정주형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2조)
-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육성 근거 명시화(안 제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의한 시장의 책무사항 명시
-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용도 명시(안 제4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우리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법 제4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되, 조례에 지원범위를 규정

○ 문화공간의 확충(안 제5조)

-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 시 소유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우리 시 소유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9조에
규정된 무상 대여 근거를 명시함.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안 제6조 및 7조)

—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을 규정

— 경비를 지원받은 자의 정산의무 규정 명시

○ 사무의 검사·감독(안 제8조)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 사무 및 정산
검사, 시정요구, 보조금의 회수 등을 명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24826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문화시설담당자

(전화 : 033-639-2958, FAX : 033-639-2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33-639-2226,
29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관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 및 발전)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제5조(유희공간의 활용)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시장이 소유한 유희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희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속초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및 정산)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7조를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맞지 않아 이를 적법하게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수도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관리자의 지정 및 인사,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7조)
-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0조)
- 일반회계의 경비 부담 및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

회계에 출자와 관련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지방채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4868 / 속초시 떡밭재로 181(조양동)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전화 : 033-639-2522, FAX : 033-639-243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639-2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급수구역)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

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속초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은 「속초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의 현황

2. 회계처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